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수정 공고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는 경상남도 주력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숙련인력 확보·근로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I. 사업 총괄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 기업 : 경상도내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①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이거나
 - ②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인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근로자 : 경상도내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중 상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기업에 '24. 3. 11. 이후 취업자

< 지원 내용 >

1) 사업주 지원

- 항공산업 일도약장려금
 - 만 35세 이상~5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최저임금 100% 이상 신규채용 사업주에 월 50만원 6개월 지급
-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기숙사·통근버스 임차비 지원)
 -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목적 투자 기업에 최대 2,000만원 한도, 투자 금액의 80% 지원
-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금 (휴게실, 화장실 등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사내 근로환경 개선 목적 투자 기업에 최대 3,000만원 한도, 투자 금액의 50% 지원

2) 근로자 지원

■ 일채움지원금 (신규 취업자 지원금)

-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3·6·12개월 각 100만원, 최대 300만원 지급

■ 장기숙련기술자 인센티브 (재직자 지원금)

- 항공우주제조산업 10년 이상 경력 있는 재직자 중 사업주 추천자에게 1인당 300만원 지급

- 사업주:정부=1:2 매칭 조건

■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결혼, 출산) (재직자 지원금)

- 항공우주제조산업 재직자 중 결혼, 출산한 자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

- 사업주:정부=1:1 매칭 조건

■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 (신규 취업자 지원금)

- 항공우주제조산업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수료자에게 1인당 월 80만원 지급

(수료 후 항공우주제조산업 협력사에 취업한 자에 한함)

※ 구체적 내용은 <표.세부사업 지원내용> 참조

○ 지원기간 : 2024. 3. 11. ~ 2024. 12. 31.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사이트 구축 전 각 세부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사이트 구축 예정('24. 8. 19.예정)

○ 문 의 처 :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및 권역별 항공산업 도약센터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230-2911/pys4877@giba.or.kr)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층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760-6701/kcfly8219@nate.com)

* (임시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7층(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본 센터)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48-11, 3층('24. 8. 19. 개소 예정)

II. 세부 지원 내용 - 사업주 지원

1. 항공산업 일도약장려금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 항공산업 일도약장려금
- 지원규모 : 150명
- 지원대상 :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하고(주 4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100% 이상 임금 지급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상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 '24년 최저임금 100% 기준 : (시급) 9,860원 / (일급) 78,880원 / (월급) 2,060,740원

※ 최저시급 9,860원 1주 소정시간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지원내용 : 최저임금 100% 이상 임금지급 근로계약 체결 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의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지원
- 지원방법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지급하며, 이후 근로자 근속 확인 후 1개월 단위로 지급
- 신청기한 : 공고일 ~ 2024. 12. 10.(화) 18:00
 - 최초 지원금 신청 시 입사일부터 1회차 지원금 신청일까지의 근속기간 확인 후 지원금 소급 적용
 - 3개월 근속 유지 후 1회차 지원금 신청 가능하므로 '24.03.11. ~ '24. 8. 31.까지 취업한 자에 한함

나. 신청 자격

1) 사업장 기준

- 경상남도 소재 채용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 기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 ①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 ②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인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피보험자 수 산정은 **최초 사업지원 대상자** 채용일 직전 월말 기준

○ '24. 3. 11. 이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원을 채용한 기업

- ①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②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③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 ④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 ※ 지원기간 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위 조건 모두 유지하여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

-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기업
- (신청일 기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신청일 기준)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 (신청일로부터 지원 종료 시) 기타 사유로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2) 근로자 기준

-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상~59세 이하인 자
-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 판단 기준 >

-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자로 판단하지 않음
 - 채용일 기준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단, 2024.3.11. 이후 기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인턴 포함)를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위 조건 하나라도 만족할 수 없을 시 해당 시점부터 지원 중단

< 지원 제외 대상 >

-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미만인 자**
→ 24년 기준 표준 근로계약서상 시급(9860원) 일급(8시간 기준 78880원) 월급(월 209시간 기준 : 2060740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추가)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주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 채용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기업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공고일 ~ 2024. 12. 10.(화) 18:00

- 최초 지원금 신청 시 입사일부터 1회차 지원금 신청일까지의
근속기간 확인 후 지원금 소급 적용

- 3개월 근속 유지 후 1회차 지원금 신청 가능하므로
'24.03.11. ~ '24. 8. 31.까지 취업한 자에 한함

○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사이트 구축 예정('24. 8. 19.예정)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230-2911)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층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760-6701)

* (임시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7층(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본 센터)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48-11, 3층('24. 8. 19. 개소 예정)

- 온라인 사이트 구축 전 아래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서류

순번	구분	신청서류
1	참여 신청 시	[서식 1] 항공산업 일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사업주)
2		[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사업주)
3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사업주)
4		[서식 1-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주)
5	선정 후	[서식 2] 표준 항공산업 일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사업주)
6	정규직 채용 시	[서식 3]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제출서(사업주)
7		[서식 3-1] 사업주 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사업주)
8		[서식 3-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9	지원금 신청 시	[서식 5] 항공산업 일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사업주)
10		[서식 5-1] 사업주 확인서 (지원금 신청 시)(사업주)

- ※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일도약장려금 담당자
(☎ 055-230-2922, dlatnfk05@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일도약장려금 담당자
(☎ 055-760-6701, kcfly8219@nate.com)

2.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지원규모 : 12개사
-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중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임차비, 통근버스 임차비용을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 예정인 기업(선정 후 1명 채용* 조건)
* 단, 2024. 3. 11. 이후 기업에서 채용한 신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정 후 1명 채용 조건'에 충족으로 간주함
- 지원내용 : 고용환경 개선 투자 금액의 80% 지원(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2024. 3. 11. 이후 고용환경 개선 투자 금액 해당
- 지원방법 : ① 지원 대상 기업 고용환경 개선 투자 여부 확인 및 선정
② '24년 11월 30일까지 신규 1명 채용* 후 '24년 12월 10일까지 지원금 신청
* '24. 11. 30.까지 고용보험 가입하여야 함
③ 지급 조건 확인 후 지원금 1회 지급
- 신청기간

신청 기간	업체 선정일
공고일로부터~2024.09.13.	2024.9.30. (예정)
예산 범위 내 지원	자격 검토 및 지급 여부 신청기업 통보 (10월 이후 지원금 순차 지급 예정)

※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신청 자격

- 1) [사업장 기준] 경상남도 소재 신청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중 고용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있거나 예정인 기업

*** 기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 ①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 ②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인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지원 제외 대상 >

-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기업
 - (신청일 기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신청일 기준)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 체납기업
-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 (신청일로부터 지원 종료 시) 기타 사유로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2) [근로자 기준] 최종 선정 기업은 선정 후 '24년 11월 30일까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원을 채용

* 단, 2024. 3. 11. 이후 기업에서 채용한 신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정 후 1명 채용 조건'에 충족으로 간주함

- ①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 최소 1년 이상
- ②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③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 ④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 ⑤ (고용상태)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 판단 기준 >

-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자로 판단하지 않음
-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재직중인자
→ 단, 2024. 3. 11. 이후 기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인턴 포함)를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⑥ (기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없는 자

⑦ (기타)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기업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제외

3) 세부지원 요건

- **기숙사 임차료 지원**
 - 소재지가 경상남도이며, 사업주가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한 기숙사
ex)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 사업주가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한 승합차 및 버스 등

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신청기간	업체 선정일
공고일로부터~2024.09.13.	2024.9.30. (예정)
예산 범위 내 지원	자격 검토 및 지급 여부 신청기업 통보 (10월 이후 지원금 순차 지급 예정)

※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사이트 구축 예정('24. 8. 19.예정)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230-2911)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층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760-6701)

* (임시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7층(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본 센터)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48-11, 3층('24. 8. 19. 개소 예정)

- 온라인 사이트 구축 전 아래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 신청 및 지원 절차

1. 공고·접수	2. 서류현장 실사	3. 업체선정	4. 선정통보 및 사업추진	5. 정산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조건 검토 ■ 현장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회 개최(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통보 ■ 지원금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지급 ■ 만족도 조사

○ 신청서류

순번	구분	신청서류
1	참여 신청 시	[서식 1]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참여 신청서(사업주)
2		[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사업주)
3		[서식 3] 항공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사업주)
4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5		[서식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주)
6	선정 후	[서식 2] 표준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 지원 협약서(사업주)
7	채용 시	[서식 6]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채용자 명단 제출서(사업주)
8		[서식 6-1] 사업주 및 근로자 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사업주 및 근로자)
9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10	지원금 신청 시	[서식 8]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 신청서(사업주)
11		[서식 8-1] 사업주 확인서 (지원금 신청 시)(사업주)

※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담당자
(☎ 055-230-2923, yj0228@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담당자
(☎ 055-760-6701, kcfly8219@nate.com)

라. 지원금 지급 절차 예시

○ 지원금 지급 절차 예시

단 계	내 용	세부내용
사업체 선정	사업 지원 (기업체)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시스템 구축 예정 ※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전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업 신청 서류 제출 (24.9.13.까지)
	선정 검토 (수행기관)	- 사업 신청 서류 검토 - 현장점검(또는 유선연락)을 통한 필요성 확인
	최종 선정 (수행기관)	- 지원 우선순위 반영 지원 기업 선정 - 필요 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 - 지원 업체 최종 선정 및 통보 (24.9월 중 예정)
지원금 지급	신규 인력 채용 (기업체)	- '24년 11월 30일까지(고용보험취득일 기준) 아래 조건 모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채용 * '24.3.11. 이후 채용자 소급 적용 가능 ①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 최소 1년 이상 ②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③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④ (임금수준)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⑤ (고용상태)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⑥ (기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는 자
	고용환경 개선활동 진행 후 지원금 지급 신청 (기업체)	- 선정 후 24. 12.10.일까지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지원금 지급 (수행기관)	-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검토 - 신규 채용 인원 근로조건 확인 및 현장 실사 후 지원금 순차 지급
사후관리	사후관리 수행 (수행기관)	- 고용환경 개선 시설 유지 확인 - 참여 기업 및 재직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3.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지원금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지원금
- 지원규모 : 12개사
-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중 사내화장실, 식당, 휴게실, 샤워실 등 근로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있거나 예정 기업(선정 후 1명 채용* 조건)
* 단, 2024. 3. 11. 이후 기업에서 채용한 신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정 후 1명 채용 조건'에 충족으로 간주함
- 지원내용 : 근로환경 개선 투자 금액의 50% 지원(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
2024. 3. 11. 이후 근로환경 개선 투자 금액 해당

- ▶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목욕시설, 화장실, 구내식당 등 근로환경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 운동기구, 공기정화기, 냉난방기, 기숙사휴게실 가구 등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 지원 불가
- ※ 단, 아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함
 - 천정형 냉난방기, 환풍기 등의 설비(시설비)는 지원 가능
 - 투자 금액 중 기업 부담금은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가능

- 지원방법 : ① 지원 대상 기업 근로환경 개선 투자 여부 확인 및 선정
② '24년 11월 30일까지 신규 1명 채용 * 후 '24년 12월 10일까지 지원금 신청
* '24. 11. 30.까지 고용보험 가입하여야 함
- ③ 지급 조건 확인 후 지원금 1회 지급

○ 신청기간

신청기간	업체 선정일
공고일로부터~2024.09.13.	2024.9.30. (예정)
예산 범위 내 지원	자격 검토 및 지급 여부 신청기업 통보 (10월 이후 지원금 순차 지급 예정)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신청 자격

- 1) [사업장 기준] 경상남도 소재 신청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중 근로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있거나 예정인 기업

*** 기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 ①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 ②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인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지원 제외 대상 >

-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기업
 - (신청일 기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신청일 기준)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 체납기업
-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 (신청일로부터 지원 종료 시) 기타 사유로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2) [근로자 기준] 최종 선정 기업은 선정 후 '24년 11월 30일까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원을 채용

* 단, 2024. 3. 11. 이후 채용자에 대해 소급 지원 가능

- ①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 최소 1년 이상
- ②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③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 ④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 ⑤ (고용상태)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 판단 기준 >

-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자로 판단하지 않음
-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자
→ 단, 2024.3.11. 이후 기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인턴 포함)를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⑥ (기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없는 자
- ⑦ (기타)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기업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제외

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신청기간	업체 선정일
공고일로부터~2024.09.13.	2024.9.30. (예정)
예산 범위 내 지원	자격 검토 및 지급 여부 신청기업 통보 (10월 이후 지원금 순차 지급 예정)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사이트 구축 예정(24. 8. 19.예정)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230-2911)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층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760-6701)

* (임시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7층(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본 센터)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48-11, 3층(24. 8. 19. 개소 예정)

- 온라인 사이트 구축 전 아래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 신청 및 지원 절차

1. 공고·접수	2. 서류현장 실사	3. 업체 선정	4. 선정통보 및 사업추진	5. 정산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조건 검토 ■ 현장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시 심사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통보 ■ 지원금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지급 ■ 만족도 조사

○ 주의사항

- 근로환경 개선 작업 종료 시점은 선정 과정에서 수행기관과 협의 하여 조율해야 함
- 사업 계획 변경시 반드시 수행기관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신청서류

순번	구분	신청서류
1	참여 신청 시	[서식 1]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지원금 참여 신청서(사업주)
2		[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사업주)
3		[서식 3]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 계획서(사업주)
4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사업주)
5		[서식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주)
6	선정 후	[서식 2] 표준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지원금 사업 지원 협약서(사업주)
7	채용 시	[서식 6]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지원금 채용자 명단 제출서(사업주)
8		[서식 6-1] 사업주 및 근로자 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사업주 및 근로자)
9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10	지원금 신청 시	[서식 8]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지원금 지급 신청서(사업주)
11		[서식 8-1] 사업주 확인서 (지원금 신청 시)(사업주)
12		[서식 8-2] 항공산업 근로환경개선 추진결과 보고서(사업주)

- ※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사업 신청일 기준 개선 예정 사업체 : 근로환경개선 계획서(서식 3), 근로환경개선 추진결과 보고서(서식 8-2) 모두 제출
- ※ 사업 신청일 기준 개선 종료 사업체 : 근로환경개선 추진결과 보고서(서식 8-2) 제출
- ※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근로환경개선지원금 담당자
(☎ 055-230-2923, yj0228@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근로환경개선지원금 담당자
(☎ 055-760-6701, kcfly8219@nate.com)

라. 지원금 지급 절차 예시

○ 지원금 지급 절차 예시

단 계	내 용	세부내용
사업체 선정	사업 지원 (기업체)	- 항공산업 도약 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시스템 구축 예정 ※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전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업 신청 서류 제출 (공고일 ~ '24.9.13.까지)
	선정 검토 (수행기관)	- 사업 신청 서류 검토 - 현장점검(또는 유선연락)을 통한 필요성 확인
	최종 선정 (수행기관)	- 필요 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 - 지원 업체 최종 선정 및 통보 ('24.9월 中 예정)
지원금 지급	신규 인력 채용 (기업체)	- '24년 11월 30일까지(고용보험취득일 기준) 아래 조건 모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채용 * '24.3.11. 이후 채용자 소급 적용 가능 ①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 최소 1년 이상 ②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③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④ (임금수준)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⑤ (고용상태)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⑥ (기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는 자
	근로환경 개선활동 진행 후 지원금 지급 신청 (기업체)	- 근로환경개선활동 종료(대금 등 기업 선지급) - 선정 후 '24.12.10.일까지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지원금 지급 (수행기관)	-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검토 - 신규 채용 인원 근로조건 확인 및 현장 실사 후 지원금 순차 지급
사후관리	사후관리 수행 (수행기관)	- 근로환경 개선 시설 유지 확인 - 참여 기업 만족도 조사 실시

Ⅲ. 세부 지원 내용 - 근로자 지원

1. 일채움지원금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 일채움지원금
- 지원규모 : 250명
-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에 '24. 3. 11. ~ '24. 9. 10.이내 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
-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3·6·12개월 근속 시 각 근속기간마다 100만원 씩 최대 300만원 지급(최대 3회)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2025년도 사업 연장시, 미도래 개월 지원금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방법 : 3·6·12개월 근속 사실 확인 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기한 : 공고일 ~ 2024. 12. 10.(화) 18:00
- '24. 3. 11.(월) ~ '24. 9. 10.(화)까지 취업자에 한함

나. 신청 자격

- 경상남도 소재 채용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에 '24. 3. 11. ~ '24. 9. 10.이내 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

* 기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 ①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 ②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인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피보험자 수 산정은 최초 사업지원 대상자 채용일 직전 월말 기준

- 나이(만 15세 이상) 및 직무 제한 없음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 채용일 기준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인 자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일자리 채용 청년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수당) 등
-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단, 휴업/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시설 관리 서비스업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기업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추가)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공고일 ~ 2024. 12. 10.(화) 18:00

-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뒤 지원금 신청
- 최초 지원금 신청 시 입사일부터 1회차 지원금 신청일까지의 근속기간 확인 후 지원금 소급 적용
- 2·3회차 지원금 신청부터는 해당 근속기간(6·12개월)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지원금 신청
- '24. 3. 11.(월) ~ '24. 9. 10.(화)까지 취업자에 한함

○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사이트 구축 예정('24. 8. 19.예정)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230-2911)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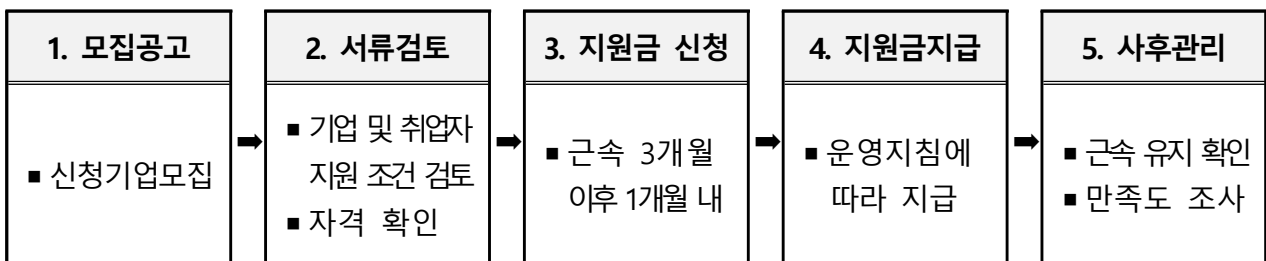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760-6701)

* (임시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7층(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본 센터)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48-11, 3층('24. 8. 19. 개소 예정)

- 온라인 사이트 구축 전 아래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서류

순번	구분	신청서류
1	참여 신청 시	[서식 1] 일채움지원금 참여신청서(사업주)
2		[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사업주)
3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사업주)
4		[서식 1-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주)
5		[서식 2]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제출서(사업주)
6		[서식 2-1] 근로자 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근로자)
7		[서식 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8	지원금 신청 시	[서식 4] 일채움지원금 사업 지원금 신청서(근로자)
9		[서식 4-1] 근로자 약약서 (지원금 신청 시)(근로자)

- ※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일채움지원금 담당자
(☎ 055-230-2923, yj0228@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일채움지원금 담당자
(☎ 055-760-6701, kcfly8219@nate.com)

2. 장기숙련기술자 인센티브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 장기숙련기술자 인센티브
- 지원규모 : 250명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10년 이상 경력 있는 재직자 중 사업주가 추천한 근로자
- 지원내용 : 도내 항공우주제조업체 재직 중이고 사업주가 추천한 근로자에게 1인당 300만원 지원
※ 단, 사업주:정부 = 100만원:200만원 매칭 조건
- 지원방법 : 사업주 추천 및 사업주 지원 사실 확인 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기간

신청기간	대상자 선정
공고일로부터~2024.8.30.	2024.9.10. (예정)
예산 범위 내 지원	자격 검토 및 지원금 신청기업 통보 (9월중 지원금 신청, 10월중 지원금 지급 예정)

※ 예산 미소진 시, 10월중 2차 모집 예정

나. 신청 자격

- 경상남도 소재 신청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에 10년 이상 경력 있는 근로자 중 사업주가 추천한 자

*** 기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 ①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 ②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인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피보험자 수 산정은 **최초**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으로 함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 지원 제외 근로자 >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자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지원 제외 기업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관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신청기간	대상자 선정
공고일로부터~2024.8.30.	2024.9.10. (예정)
예산 범위 내 지원	자격 검토 및 지원금 신청기업 통보 (9월 중 지원금 신청, 10월 중 지원금 지급 예정)

※ 예산 미소진 시, 10월중 2차 모집 예정

○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사이트 구축 예정('24. 8. 19.예정)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230-2911)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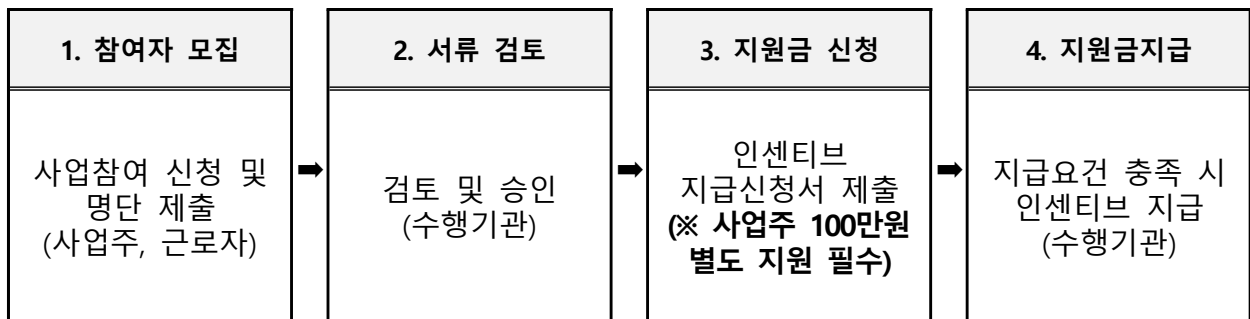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760-6701)

* (임시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7층(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본 센터)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48-11, 3층('24. 8. 19. 개소 예정)

- 온라인 사이트 구축 전 아래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 신청 및 지원 절차



○ 사업 참여 신청서류

순번	구분	신청서류
1	참여 신청 시	[서식 1] 참여 신청서(사업주)
2		[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사업주)
3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사업주)
4		[서식 1-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주)
5		[서식 2] 장기숙련기술 추천 근로자 명단 제출서(사업주)
6		[서식 2-1] 근로자 확인서 (추천 명단 제출 시)
7		[서식 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8	지원금 신청 시	[서식 3] 장기숙련기술자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사업주)
9		[서식 3-1] 장기숙련기술자 인센티브 사업주 부담금 수령 확인서(사업주)

- ※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장기숙련기술자 인센티브 담당자
(☎ 055-230-2922, dlatnfk05@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장기숙련기술자 인센티브 담당자
(☎ 055-760-6701, kcfly8219@nate.com)

3.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결혼, 출산)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결혼, 출산)
- 지원규모 : 60명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재직자 중 결혼 또는 출산한 자
- 지원내용 : 도내 항공우주제조산업 분야 재직자 중 결혼 및 출산한 자에게 1인당 100만원 지원
※ 단, 사업주:정부 = 50만원:50만원 매칭 조건
신청기간('24.3.11.~'24.12.10.) 내 사유발생시 지원
* 사유발생일은 혼인신고일 및 출산일을 기준으로 함
- 지원방법 : 결혼·출산 여부 및 사업주 지원 사실 확인 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기한 : 공고일 ~ 2024. 12. 10.(화) 18:00

나. 신청 자격

- 경상남도 소재 신청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에 재직자 중 결혼 또는 출산한 자

* 기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 ①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 ②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인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상생협력 협약 기업의 협력사를 우선 지원함

- 피보험자 수 산정은 최초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으로 함

○ 사업주로부터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로 50만원을 지원받은 자

- 사업주로부터 50만원 미만 지원받을 시 본사업 지원 불가하며, 5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더라도 본 사업은 50만원을 지원함

< 지원 제외 대상 >

- 동일한 지원 대상자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경우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공고일 ~ 2024. 12. 10.(화) 18:00

-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사이트 구축 예정(24. 8. 19.예정)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230-2911)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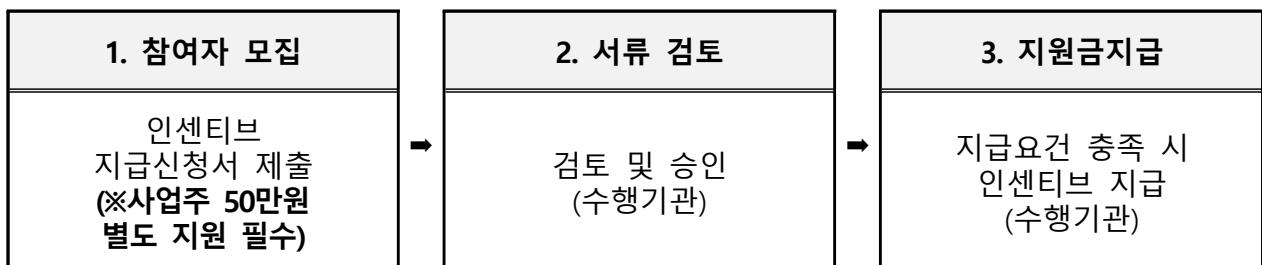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760-6701)

* (임시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7층(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본 센터)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48-11, 3층(24. 8. 19. 개소 예정)

- 온라인 사이트 구축 전 아래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서류

순번	구분	신청서류
1	참여 및 지원금 신청 시	[서식 1]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신청서(사업주)
2		[서식 1-1] 사업주 및 근로자 확인서 (사업주,근로자)
3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4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사업주)
5		[서식 1-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사업주)
6		[서식 2] 사업주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 지급 확인서(사업주)

- ※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 담당자
(☎ 055-230-2922, dlatnfk05@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 담당자
(☎ 055-760-6701, kcfly8219@nate.com)

4.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
- 지원규모 : 40명
- 지원대상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사천) 항공생산실무과정 수료자 중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에 취업한 자
- 지원내용 : 훈련과정 수료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
※ 훈련과정 수료 후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에 취업한 자에 한하여 소급 지원
- 지원방법 : 훈련수료 및 취업 확인 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기한 : 공고일 ~ 2024. 12. 10.(화) 18:00
- '24. 12. 10.(화)까지 취업 후 신청한 자에 한함

나. 신청 자격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사천) 항공생산실무과정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월 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 출석하고 교육 과정 수료 후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에 취업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

- 실업급여수급자
- 월 훈련일수의 100분의 80미만 출석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재직자관련 일학습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공고일 ~ 2024. 12. 10.(화) 18:00
- '24. 12. 10.(화)까지 취업 후 신청한 자에 한함

○ 신청방법 :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사이트 구축 예정('24. 8. 19.예정)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230-2911)

*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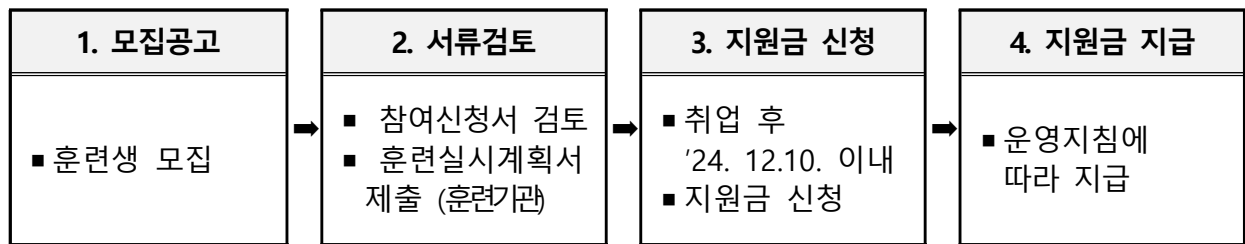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760-6701)

* (임시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7층(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본 센터)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48-11, 3층('24. 8. 19. 개소 예정)

- 온라인 사이트 구축 전 아래 <문의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서류

순번	구분	신청서류
1	사업참여 신청서	[서식 1] 참여 신청서(훈련기관)
2		[서식 1-1] 훈련실시계획서(훈련기관)
3		[서식 1-2]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훈련기관)
4		[서식 1-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훈련생)
5	지원금 신청서	[서식 2] 지원금 신청서(훈련기관)
6		[서식 2-1] 지원금 명단 제출서(훈련기관)
7		[서식 2-2] 취업사실 확인서(훈련생)

※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 담당자
(☎ 055-230-2922, dlatnfk05@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 담당자
(☎ 055-760-6701, kcfly8219@nate.com)